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김규혜**

요약

본 연구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자영업자 노동과 관련된 사업 특성, 자본 특성, 개인 특성이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자료는 16차부터 20차까지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인 청년 자영업자는 각 차수의 조사 시점에서 만 19세~39세이며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인 응답자로 총 512명이다. 연구설계에서 종속변수는 소득 불안정성과 사회보험 불안정성이며, 독립변수는 사업 특성(업종, 사업체 규모, 사업자 등록, 사업 지역, 자기 사업장, 사업 지속기간), 자본 특성(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 부채), 개인 특성(성별, 연령, 학력)이다. 분석방법으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업종이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보다 사업 서비스업과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인 경우,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자기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 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금융 자산이 증가할수록, 남성일 경우 소득 불안정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사업 특성 중 업종, 사업체 규모, 사업자 등록, 사업 지역이, 자본 특성 중에서 금융 자산이, 개인 특성 중에서 성별, 학력이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수준을 결정하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자영업자와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영향 요인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청년 자영업자, 소득 불안정성, 사회보험 불안정성

* 본 논문은 2020년 2월에 발행된 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학위논문 심사를 통해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신 이화여대 이승운·김미혜·조상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논문에 관하여 유익한 심사평을 주신 세분의 심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데이터연구소 위촉연구원(ghkim1003@gmail.com)

1. 서론

2018년 기준 한국의 39세 이하 청년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60.5%를 차지하고 있는 50세 이상 중장년층 자영업자에 비하여 작은 규모다(통계청, 2018). 전체 청년 취업자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비중 또한 9.1%로, 전체 취업자 집단에서의 자영업자 비중이 21.0%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자영업자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8).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특징적으로 높은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높은 실업률로 인한 생계형 창업으로 설명되며, 이로 인해 주로 전통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장년층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전병유, 2003; 지은정, 2012; 김도균, 2018). 그럼에도 이러한 기존 연구는 청년 자영업자 집단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이 과소평가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와 낮은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 자영업자가 경험할 수 있는 불안정성 자체에 주목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청년은 여성, 고령자와 함께 한국에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특징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고 있다(정인영 외, 2016). 실제로 2018년 기준 한국 사회에서 만 15~29세 청년의 고용률은 42.7%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인 60.8%에 비하여 매우 낮다. 청년 노동시장의 높은 불안정성은 유사한 정치 및 경제 발전 수준에 있는 OECD 국가에서도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공급 감소, 중소기업 기피, 청년층의 전반적인 고학력화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신규 채용 감소와 같은 요인을 고려할 때, 한국 청년이 경험하는 노동 불안정성은 단순히 한 세대에 국한된 단기적이며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감사원, 2016). 한편 한국 청년 고용 정책 중 자영업자 대상 정책은 주로 창업 정책으로, 국회 예산정책처(2017)는 2017년 기준 창업지원이 직업훈련에 이어 2번째로 예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하여, 3번째로 컸던 2016년에 비해 창업 정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승렬 외, 2017 재인용). 이는 지속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청년과 같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 창업 정책을 통한 자영업 장려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김경아·한정림, 2011).

청년 자영업자는 중장년층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실업률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영업 노동시장의 특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2008년 경기침체의 영향은 50대 이상의 '생계형 창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형 창업'을 하는 30세 미만 청년층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김복순, 2009). 한편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서 발생한 고용형태의 다각화로 등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발달로 확산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은 비전형 노동자는 청년 세대의 비임금근로자 집단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1인 자영업자와 다르면서도 유사한 취약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황덕순 외, 2016; 서정희·백승호, 2017; 이승렬, 2018; 장지연,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 자영업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기존의 한국 자영업자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을 소득 불안정성과 사회보험 불안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2. 이론적 배경

1) 한국 자영업 노동시장의 특징

(1) 한국 자영업자의 영세성 및 이질성

한국 사회의 자영업 노동시장에 관한 다수의 기존 연구는 자영업의 이점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자발적으로 자영업에 취업한다는 유인 가설보다, 경기적인 상황이나 구조적인 제약으로 인한 실업 상태에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자영업에 취업한다는 구축 가설을 지지하였다(전병유, 2003; 최문경·이명진, 2005; 지은정, 2012). 우선 자영업 노동시장 진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전병유(2003)에 따르면,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증가한 실업률은 ‘생계형 창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은정(2012)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자영업 진입은 구축 가설을 따르며, 실업률이 증가할수록 자영업 이행률이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실시한 창업가 정신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투자형(opportunity), 가업형(family business), 생계형(necessity) 창업 중 한국은 자영업이나 창업 시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한 ‘생계형 창업’이 63%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European Commission, 2012; 김기현, 2014 재인용). 해당 결과들은 한국의 자영업 노동시장 진입 요인이 주로 ‘생계형 창업’으로 설명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부정적인 고용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전병유, 2003; 지은정, 2012; 김기현, 2014; 안중순, 2015).

구축 가설에 따르면, 자영업으로의 유입은 노동자 개인 차원은 물론 자영업 종사자 집단적 차원의 위험, 즉 사회적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을 암시한다(안중순, 2015).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자영업의 집단적 차원의 사회적 위험을 논하기에 앞서 자영업자 집단이 동질적인가에 대해 질문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자영업자 범주에는 학력이나 숙련 등의 취업 능력에서 임금노동자 집단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상위과 하위에 위치한 이질적인 두 개의 집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자영업자의 계층적 특성을 동질적인 중간계급으로 규명하려는 연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병훈·신재열, 2011). 이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소득추이를 비교하여, 임금노동자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만큼 자영업자 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하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이하 자영자) 간의 소득 격차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한 김경아·한정림(2011)의 논의 결과와도 연결된다. 또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상하위 소득 분위 자영업자의 소득 점유율이 늘어나 자영업자 집단 내부의 소득의 이질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 외, 2016). 안중순(2015)은 자영업자 집단을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갖는 하위집단들의 집합적인 범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영업자를 상층 및 하층 자영자와 특수고용종사자로 구분하여 각 하위 범주 별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을 설명한다. 분석 결과, 자영업자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인 미만 종사자가 있는 고용주는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크게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안중순, 2015).

한국에서 비임금근로자 중 1인 자영업자인 자영자의 비중은 고용주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주현 외, 2013). 그럼에도 앞선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영자는 낮은 임금과 고용의 질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황중률(2019)에 따르면, 산업 별로 자영업자 중 자영자의 비중은 2017년 기준 전 산업 평균이 71.7%이며, 산업 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자영자의 비중 또한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자영자의 감소 현상과 노동 불안정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실태 조사는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이탈하고 있는 자영자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새로운' 자영업자라는 사회보호의 사각지대

OECD 국가 중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자의 비중이 낮고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상황은 해당 국가들에서 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김일광, 2018). 한편, 한국은 경제 규모와 달리 자영업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진입장벽이 낮고 초기 투자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소매업 혹은 요식업 등을 통한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다(지은정, 2012). 또한 실업대책의 수단으로 활용된 자영업 지원 정책을 한국 복지 확대의 다른 측면으로 분석한 김도균(2015)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그 결과 대량 실업과 대량 퇴직 등 사회적 위험이 워낙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창업이 일종의 복지대체제로 활용되어 온 외환위기 이후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당장의 고용 위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었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영업 부채를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유발했다는 것이다(김도균, 2015). 따라서 한국에서 창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

는 역할을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자영업 또한 노동력의 주변화(marginalization)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해되어야 한다(지은정, 2012).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자가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은 표준적 고용관계에 있는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안전망과 디지털 기술 발전이라는 변화를 통해 '새로운' 자영업자라는 사회보호의 사각지대로 연결되고 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형태의 다각화는 '종속적 자영업자' 혹은 '가짜 자영업자'라고 명명될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종사자와 프랜차이즈 점주 등과 같은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새로운 노동 형태를 등장시켰다(서정희·박경하, 2016; 서정희·백승호, 2017). 이러한 고용형태 다각화과 국면과 디지털 기술 발달이 결합하면서, 프리랜서(freelancers), 1인 기업, 크라우드 노동자(crowd workers),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이 기존의 자영업자와 유사한 취약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또한 국제적으로 새로운 사회보호의 사각지대로 논의되고 있다(Buschhoff & Schmidt, 2009; 황덕순 외, 2016; 서정희·백승호, 2017; 이승렬, 2018; OECD, 2019). 즉,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달 속에서 기업이 인건비를 절약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고용형태를 다각화하면서 가짜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과 같은 '새로운' 자영업자들의 일자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서정희·박경하, 2016; 오재호, 2019).

'새로운'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전형 노동자의 등장은 고용주와 노동자라는 개념도 모호해지게 하고 있다(서정희·백승호, 2017; 이승렬, 2018; 오재호, 2019; OECD, 2019). 노동법상 고용주로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기업의 선택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새로운' 자영업자 집단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노동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종사상 지위에서는 자영업자이기에 고용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장지연, 2018). 즉,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초한 고용보호 및 사회보호 제도가 노동시장 변화 양상에 따라 대응하지 못하여 비전형 노동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과 같이 표준적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노동조건에 침해를 경험한다(장지연, 2018; 이승윤 외, 2019). 예를 들어, 프리랜서들은 일감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우며 일감을 구하더라도 계약서 미작성 혹은 사용자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보수를 제때 혹은 아예 받지 못하기도 한다(오재호, 2019; 이승윤 외, 2019).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실존하는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에서도 높은 노동 강도를 유지하지만, 플랫폼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실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다(장지연 외, 2017). 그럼에도 이들은 전통적인 노동자, 즉 피고용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문제 제기조차 어렵다(오재호, 2019).

(3) 청년 노동시장에서의 자영업자

한국의 전체 청년(만 19~39세)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9.1%로 다른 연령 집단과 비교하면 낮지만, 이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6~7%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18; OECD, 2016).¹⁾ 또한 청년 자영업자의 추이 및 현황에 대한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는 대체적으로 청년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논의하였다. 우선 고가영·이근태(2012)는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며 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던 29세 이하 청년층이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자영업 선호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기현(2014)에 따르면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서 1인 기업을 포함한 개인 기업의 청년 창업 실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지만, 중소기업청의 '신설법인동향'에서 청년 법인 창업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청(2017) 또한 국세 통계를 바탕으로 청년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 초반 이하의 청년 자영업자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미등록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집단으로 자영업자를 정의한 본 연구에서 청년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 자영업자 중 고학력 중심의 20대 법인 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국 청년의 자영업 유입 요인의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는 체계적인 분석은 없지만, 유럽의 1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한 Dvoulety & Mühlböck(2018)에 따르면 실업 경험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에 비해 생계형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 저숙련 및 저소득 일자리에 종사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2008년 경기침체가 중장년층의 '생계형 창업' 뿐만 아니라 30세 미만 청년층의 취업이 되지 않아 자영업에 진입하는 '취업형 창업'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김복순, 2009).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제적으로 창업한다는 점에서 청년 자영업자의 취업형 창업은 생계형 창업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형 창업은 황광훈(2017)의 청년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이 1년 이내에, 5~6명은 2년 이내에 폐업, 전직 등의 형태로 자영업 시장에서 이탈하며, 나아가 같은 청년 집단이라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공일치도가 낮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이탈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와 연결된다. 이는 청년 자영업자의 폐업, 전직, 실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 여성 등과 같은 취업 취약계층의 자영업 진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현상이 일반적이다(김경아·한정림, 2011; Rouse & Kitching, 2006; Shane, 2008; Eurofound, 2015; Jones et al., 2015). 그럼에도 다수의 해외 연구에 따르면,

1) 예외적으로 이탈리아(15.5%), 그리스(13.3%) 등과 같은 라틴/가톨릭계 국가는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가업의 비중이 높아 만 15~34세의 전체 청년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OECD, 2016).

청년 자영업자 대상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는 불분명하다(Burchell et al., 2015; Ortlieb et al., 2018). 즉, 적은 수의 청년만이 창업을 통해 실업 상태로부터 벗어나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수의 청년 자영업자가 실업 상태로 진입할 뿐만 아니라, 청년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고용주는 적은 반면 가짜 자영업자는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질성이 나타났다(Ortlieb et al., 2018). 한국에서 또한 청년 자영업자 정책인 창업지원 사업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7년 기준 직업훈련에 이어 2번째로 예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이승렬 외, 2017 재인용). 다만 청년 창업 정책 연구 중 드물게 일자리 측면에서 성과를 분석한 김세움·김주섭(2018)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창업지원 정책은 장기적인 발전보다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청년 집단 자체의 좋은 일자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일자리 측면에서의 청년 자영업자 정책의 한계는 Burchell et al.(2015)의 논의와 같이 노동시장, 사회보호, 교육, 보건 등의 다양한 정책 분야를 연계하여 청년 자영업 정책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2) 청년 자영업자의 노동 불안정성

서비스 경제 사회로의 전환 이후 노동의 불안정성 연구는 주로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로 등장한 비전형 노동(irregular work)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백승호, 2014). 그럼에도 노동의 불안정성이 임금근로자 집단 내에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며, 불안정 노동이 고용형태의 불안정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이진경, 2012; 강남훈, 2013; 광노완, 2013; ILO, 2011; Emmenegger et al., 2012; 백승호, 2014 재인용). 무엇보다도 자영업자의 경우 구축 가설을 지지하는 한국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노동 불안정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사회경제적 지위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다(이병훈·신재열, 2011). 또한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 전체에 비해 고용계약과 근로조건에서도 모두 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정희·박경하, 2015).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자영업자의 불안정성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은 기존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승렬 외, 2009; 이병희 외, 2016; 김수환·감형규, 2017). 자영업으로 유입된 노동력의 주변화와 자영업 일자리의 저숙련 및 불안정성 증가로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위협받는다라는 중첩된 위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불안정 노동 연구에서의 논의와 자영업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을 소득 및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으로 구성한다(백승호, 2014; 이승윤 외, 2017).

(1) 소득 불안정성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은 자영업자 내부에서 양극화 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임금 근로자의 년도 별 시간당 임금 중위값의 2/3을 저임금선으로 정의한 후,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이 해당 기준보다 낮을 경우 저소득으로 정의한 이병희(2016)에 따르면, 임금 중위값의 3/2보다 높을 경우 고소득, 그 사이의 경우는 중간소득으로 분류한 자영업자 집단 내에서 저소득 비율과 고소득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 내부의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통해 자영업자의 시간당 소득을 분석한 이승렬(2018)에 따르면, 고용주는 지속적으로 상용노동자보다 높은 소득을 보이지만 자영업자는 상용노동자보다 거의 소득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4,800만 원 미만의 연간 매출액과 자영업자의 생활 실태를 반영하는 150만 원 미만의 월 평균 소득을 '영세성'의 기준으로 제시한 이승렬 외(2009)는 자영업자의 하위 25%의 소득 분포에서 소득에 대한 연령, 교육연수, 성별(여성)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중위 순소득 2,360만 원을 기준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일반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불평등 영향요인을 분석한 임은의·임유진(2013)은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지방일수록, 가구원이 적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가 지원하지 않을수록, 사회적관계가 약할수록, 자본이 적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도소매업과 운수서비스업일수록 영세자영업주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병희 외(2016)에 따르면 연령 별 저소득 자영업자에서 20대 자영업자의 구성비는 2.3%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대 자영업자에서 저소득의 발생비는 45.4%로 60대 이상 자영업자(50.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 자영업자의 집단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더라도 거의 절반이 저소득 자영업자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세대별 분류에서 청년 자영업자 집단의 작은 규모로 인해 소득 불안정성이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황광훈(2017)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226만 7천 원으로, 성별 분포에서 남성은 253만 5천 원, 여성은 199만 8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산업 분포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소매·음식업'은 242만 7천 원으로 전체 평균 소득보다 높았지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204만 2천 원으로 나타나 높은 비중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중위소득이 21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거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보험 불안정성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발견되는 자영업자의 급증은 주로 노동유연화로 발생한 대량 실업 및

퇴직으로 인한 중고령층의 유입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이승렬, 2018).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전제한 기여 능력과 급여 적절성 수준을 기준으로 설계된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는 저소득 자영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크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에게는 급여가 너무 낮은 모순을 야기하기 때문이다(Baldwin, 1990; 김수완·김상진, 2012 재인용). 이에 대해 안종순(2015)은 개인화로 인해 구조 및 제도로부터 자유로워 지지만 동시에 기존의 보호체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여 다양한 위험에 더욱 노출되는 ‘복지의 개인화’의 대표적인 집단이 자영업자라고 분석한다. 임금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제도에서 자영업자들은 고용주나 임의가입대상이 되어 사회보장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은 사회적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안종순, 2015; 장지연, 2017).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논의를 바탕으로 비표준적 고용형태인 자영업자의 경우, 법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적용 대상이더라도 보험료 납부가 어렵다는 점에 기반하여, 법적 가입 자격과 보험료 납부 기준을 중심으로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파악할 것이다(이병희, 2012; 김동헌, 2014; 서정희·백승호, 2014; 이윤진, 2017). 구체적으로 4대 사회보험에서 자영업자의 가입 현황 및 제도적 배제를 분석한 후 기존 연구에서 분석한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국민연금의 경우 통계청(2018)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5.8%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시점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86.2%인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10.4% 포인트가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1]에서와 같이 같은 시점에서 청년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71.7%로, 이는 2011년 8월 가입률인 52.4%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청년 임금근로자(99.1%)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채창균 외, 2012; 통계청, 2018). 그럼에도 여전히 자영업자의 35.8%가 미가입자이며, 가입자의 대부분이 본인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라는 점을 통해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적 배제는 가입 자격보다는 가입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보험료 부과 체계를 통해 발생한다. 자영업자가 경험하는 보험료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에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표 1]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국민연금 가입 형태

(단위: 천 명, %)

	상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자	전체
가입자	6611(99.1)	294(30.4)	400(41.4)	694(71.7)
사업장(직장)가입자	6595(98.9)	168(17.4)	77(8.0)	245(25.3)
지역가입자	16(0.2)	125(12.9)	320(33.1)	445(46.0)
국민연금 및 특수지역연금 수급(권)자	0	1(0.1)	3(0.3)	4(0.4)
미가입자	54(0.8)	51(5.3)	223(23.0)	274(28.3)
전체	6665	345(35.6)	623(64.4)	968(100.0)

자료: 통계청(2018),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직장가입자는 특정 조건을 제외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영업자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 자격에서의 배제는 없다. 2018년 9월 기준 건강보험의 전체 가입률이 97.2%이며, 이 중 직장가입자가 72.8%, 지역가입자가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그럼에도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직장가입자보다, 다수의 자영업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가입자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를 고려한 보험료부과점수를 통해 보험료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병희 외(2016)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재정패널 조사대상자인 고용주와 자영자는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이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과반 수 이상이 연 순소득 2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 중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피부양자와 같이 우회적인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자만을 가입 대상으로 했지만, 2012년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자영자 혹은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철수 외, 2014). 2018년 6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 중 1만 8천 명이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1만 2천 명이 자영자이다(이승렬, 2018).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 자격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자체가 배제된다. 또한 보험료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사업주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제도적 배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

체의 노동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고용주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서 자영자를 제외하고 있다는 제도적 한계를 갖고 있다(김수환·김형규, 2017).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별도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배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나아가 황광훈(2017)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 자영업자 10명 중 최소 8명은 2년 이내에 폐업 및 전직을 하고 저소득일수록 폐업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개선 정책에서 청년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또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근로자에게만 가입 대상이 한정된 사회보험 제도지만, 2009년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 이후 자영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주’로써 고용주와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의 임의 가입을 허용하였다. 2018년 8월 기준 자영자를 제외한 전체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5.7%이며, 청년 고용주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4.5%로 전체 고용주와 유사하다(통계청, 2018).²⁾ 구체적으로 종사자 규모 별 청년 고용주의 가입률을 보면, 10~29명은 83.3%, 5~9명은 73.9%,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1~4명인 경우가 46.9%로 가장 낮아 영세한 고용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고용원의 유무가 산재 경험 가능성과 실증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중 재해 위험이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이기평·김영미, 2018).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총 18개 업종³⁾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졌다(이기평·김영미, 2018). 또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 조건이 사업자 등록이기에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는 가입 자체에서 배제된다. 나아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 전액 자기 부담이라는 점에서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

3) 청년 자영업자의 불안정성 영향 요인

청년 자영업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또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청년 자영업자는 부족한 경력, 빈약한 네트워크,

-
- 2)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는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자영업자 중 고용주만 대상으로 조사하여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3) 2005년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2009년에 건설기계사업, 2012년에 퀵서비스업, 예술인, 2016년에 대리운전업, 2018년에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이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었다.

한정적인 정보와 숙련, 제한적인 자본 접근성과 같은 요소로 인해 이미 불안정한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보다 더 취약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Jones et al., 2015). 따라서 기존의 중장년층 혹은 전체 자영업자 중심의 불안정 노동 분석을 바탕으로,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크게 사업 특성, 자본 특성, 개인 특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청년 자영업자의 사업 특성은 업종, 사업체 규모, 사업자 등록 유무, 사업 지역, 자기 사업장 유무, 사업 지속기간으로 구성하였다. 우선 업종과 직종은 기존 연구에서 유사한 영향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어, 본 연구는 업종을 주요 영향 요인으로 고려하였다(성지미·안주엽, 2003; 지은정, 2012; 김수완·김상진, 2012; 임은의·임유진, 2013; 김창오, 2015). 구체적으로 임은의, 임유진(2013)은 업종이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운수업일수록 저소득 자영업주가 될 확률이 증가한다고 논의하였으며, 이승윤 외(2017)는 청년 노동자의 경우 업종 중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등에서 불안정 집단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분석되었다.

사업체 규모(고용원 규모) 또한 기존 연구에서 자영업자 불안정성의 주요 영향 요인이다(지은정, 2012; 임은의·임유진, 2013; 한정림·김경아, 2014). 우선 금재호·이인실(2011)은 사업체 규모가 확대될수록 소득 증가 확률이 높아져 사업체 규모에 따른 소득 격차가 심화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안종순(2015)은 5인 미만 사업체 고용주보다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의 미가입률이 최소 3배 높다고 분석하여, 자영업자의 사업체 규모와 사회보험 불안정성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통한 자영업자의 세금을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를 공식 경제에 포함시키는 제도적 수단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사업자 등록률은 70.2%로, 전체 국가 평균인 88.9%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새로운 자영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에서 10명 중 2명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남윤형 외, 2016; 오재호, 2018). 비공식 경제는 불투명한 소득 체계로 인한 과세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로 이어진다(이병희, 2011). 이병희 외(2016)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이 63.3%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영업자의 미가입률인 20.8%에 비해 약 3배가 높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자 등록 유무와 자영업자의 불안정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업체 소재 지역은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주요 변수로 분석되어 왔지만, 범주 설정 및 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성지미·안주엽, 2003; 김수완·김상진, 2012). 2016년 기준 청년 창업자⁴⁾의 52.4%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청년 자영업자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 2017). 이와 같은 현황과 수도권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 인프라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사업 지역이 청년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자기 사업장 유무는 기존 노동시장 연구에서 '가짜 자영업자'의 파악에 사용될 수 있는 변수다. 자영업자 집단 내 가짜 자영업자에 주목하여 근로조건 불안정성을 분석한 서정희·박경하(2015)에 따르면, 자기 사업장이 없는 자영업자들은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경우 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소득 불안정성의 경우 2008년도를 제외하면 적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속기간 또한 기존 연구에서 자영업자 불안정성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성지미·안주엽, 2003; 이승렬·최강식, 2007; 금재호·이인실, 2011). 성지미·안주엽(2003)은 자영업 지속기간이 자영업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지만, 이승렬·최강식(2007)은 자영업 종사기간이 증가할수록 자영업 소득 발생 확률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 또한 증가한다고 분석하였다. 금재호·이인실(2011) 또한 자영업자의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저소득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청년 자영업자의 자본 특성은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총 부채가 있다. 부동산 자산은 기존 연구에서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의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김경아·한정립, 2011; 임은의·임유진, 2013; 김창오, 2015; 이현정·유종선, 2016). 이현정·유종선(2016)은 자영업자의 보유 부동산 자산 규모는 임금근로자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그 자산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해당 자산은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유동성이 없는 고정 자산일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다. 자영업자의 가구자산 불평등 현황을 분석한 김경아·한정립(2011)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자영업자 집단에서의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기타 자산을 모두 고려한 총 자산이 고용주 가구에 비해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어 자영업자 내 이질성을 어느 정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 자산 또한 중요하게 자영업자의 노동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요인이다(김수완·김상진, 2012; 임은의·임유진, 2013; 김창오, 2015; 광동철 외, 2016). 광동철 외(2016)는 금융 자산 규모가 40세 이상인 일반창업과 달리 청년창업의 폐업확률의 영향 요인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김수완·김상진(2012)은 자영업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가입 영향 요인으로 금융자산 유무를 투입하여, 저소득 자영업자 집단에서 금융 자산이 있는 경우 연금 가입 확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고 분석하였다.

자영업자 가구의 총 부채는 기존 연구에서 자영업자의 영세성과 사회보험 배제를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로 언급되어 왔다(임은의·임유진, 2013; 김창오, 2015; 김도균, 2015).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간 가계부채를 비교한 김도균(2015)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자영업 부채가 자영업자의 중요한 경제적 위험이라고 분석하였다. 김창오(2015) 또한 자영업자의 총 부

채와 총 자산이 총 소득보다 자영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시간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개인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으로 구성한다. 먼저 성별은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최강식·정진욱·정진화, 2005; 이승렬 외, 2009; 김수완·김상진, 2012; 반정호, 2012; 임은의·임유진, 2013). 최강식·정진화(2007)는 임금근로자 집단보다 자영업자 집단에서 성별 소득격차가 크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생산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차별적 요인의 크기가 임금근로자 집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렬 외(2009)는 성별의 경우 하위 소득분포일수록 강한 영향 요인으로 기능하여, 여성인 경우 저소득 자영업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가입과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금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진, 2009; 김수완·김상진, 2012).

연령 또한 기존 연구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주요 영향 요인으로 제시되었다(김상진, 2009; 금재호·이인실, 2011; 김수완·김상진, 2012; 지은정, 2012; 김창오, 2015; 나수미, 2019). 자영업 매출 및 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금재호·이인실(2011)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연령에 따라 역 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30대 후반까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자 내부 소득 분위 간 편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상진(2009)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보험가입과 같은 불확실한 지출을 기피하는 기여회피 성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김수완·김상진(2012)은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력 수준은 다수의 연구에서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에 대한 영향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었다(최강식·정진욱·정진화, 2005; 이승렬·최강식, 2007; 김상진, 2009; 김수완·김상진, 2012; 지은정, 2012; 나수미, 2019). 이승렬·최강식(2007) 또한 인적자본에 해당하는 교육년수가 자영업자의 소득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김상진(2009)은 자영업자 집단에서 학력이 낮아질수록 국민연금 기여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6~20차년도의 가구용 및 개인용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 관하여 1년

1회 추적 조사를 진행하므로,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불안정성 영향요인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 차수 별로 응답자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최근 응답만을 추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소득 불안정성과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각각의 문항을 살펴보면, 소득 불안정성의 경우 1차(1998년) 조사부터 파악할 수 있지만,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구성하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경우 11차(2008년)부터 10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16차(2013년)부터 5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져,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루어지는 16차 조사부터 분석 자료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는 비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는 문항이 추가된 16차(2013년) 조사부터 20차(2017년) 조사까지의 개인자료와 가구자료를 결합하여 청년 자영업자를 추출하여 구성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인 청년 자영업자 중 ‘자영업자’는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하 고용주)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자 한다.⁵⁾ 또한 ‘청년’의 연령대의 경우, 기존 연구는 창업 준비 및 자금 마련 과정이 취업에 비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인 만 39세까지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19~39세인 청년 취업자 중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포함)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을 ‘청년 자영업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청년 자영업자는 각 차수의 조사 시점에서 만 19세~39세이며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인 응답자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연구대상자는 16차 조사 시점에만 자영업자였거나 16차 조사 시점까지 자영업자였던 79명, 17차 조사 시점에만 자영업자였거나 17차 조사 시점까지 자영업자였던 70명, 18차 조사 시점에만 자영업자였거나 18차 조사 시점까지 자영업자였던 62명, 19차 조사 시점에만 자영업자였거나 19차 조사 시점까지 자영업자였던 74명, 20차 조사 시점에만 자영업자였거나 20차 조사 시점까지 자영업자였던 227명을 합하여 총 512명이다.⁶⁾

5) 다수의 국가에서 자영업자는 다양한 법제에 기반하여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되며 국가 내부에서도 고용법, 조세법, 무역법, 사회보장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지만, 각국의 자영업에 대한 정의 및 규모 추정은 대부분 국제노동기구(ILO)의 지침에 기반한다(Pedersini·Coletto, 2010; OECD, 2014; 서정희·박경하, 2016).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자영업자는 법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아니기에 관련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이승렬 외, 2009; 홍석일, 2018). 자영업자에 관한 통계청의 정의는 사업자 등록과 무관하여 무등록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반면, 국세청의 정의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만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의는 법인 사업체를 포함하며 사업장과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의가 의미하는 집단 간 차이가 있다(남윤형 외, 2016; 홍석일, 2018).

6) 본 연구의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먼저 대상자 수집 과정에서 표본편의 문제가 있다. 즉, 한국노동패널의 전체 표본과 본 연구에서 추출한 표본 간 분석 변수들의 분포상 차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여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패널데이터가 갖는 시계열 자료로서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한 채 횡단면 자료로서의 특성만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분석자

2) 주요 변수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표 2]와 같이 소득 불안정성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종속변수로 구성한다. 우선 비임금근로자의 소득 불안정성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주로 ILO의 저임금 기준이나 OECD의 저소득 기준을 적용하였다(백승호, 2014; 서정희·박경하, 2015; 이병희, 2016; 이승윤 외, 2017).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청년 자영업자라는 개인이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측정되어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재산소득까지 포함되는 이전 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보다 개인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ILO의 저임금 기준에 따라 소득 불안정성을 정의하였다. 청년 자영업자의 월 평균 소득을 시간당 소득으로 변환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소득을 받는 경우로 정의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응답을 시간당 소득으로 변환하여 각 조사 년도를 기준으로 한국 전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의 2/3 미만의 소득을 받는 경우를 '소득 불안정성 있음'으로 보고 '1'의 값을 부여하였다.⁷⁾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 불안정성 없음'으로 보고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사회보험 불안정성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청년 자영업자가 배제된 수준에 따라 파악하였다(이승윤 외, 2017).⁸⁾ 각각의 사회보험은 각각 노령, 실업, 산업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점에서 가입한 개수에 따라 불안정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에서 가입을 '0', 미가입을 '1'로 코딩하고, 모든 응답을 합했을 때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0'의 값을 갖는 경우 '사회보험 불안정성 없음'으로 보았다. 총 1개의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1'의 값을 갖는 경우 '사회보험 불안정성 낮음', 총 2개의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2'의 값을 갖는 경우 '사회보험 불안정성 중간', 총 3개의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3'의 값을 갖는 경우 '사회보험 불안정성 높음'으로 보았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사업 특성, 자본 특성, 개인 특성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여, 다음의 [표 2]와 같이 변수

료 및 분석방법 상의 한계를 고려하여 연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7) 2013년 기준 7329원, 2014년 기준 7577원, 2015년 기준 7656원, 2016년 기준 7975원, 2017년 기준 8165원이다.

8) 건강보험의 경우, 한국노동패널 설문지에서 가입 여부 및 형태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9월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전체 가입률이 97.2%인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가 모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자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를 정의하였다. 사업 특성 중 업종은 연구대상자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종류를 파악하는 변수로, 설문지 내에서 사업체 이름, 사업체 사업내용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한다.⁹⁾ 9차 표준산업분류(2007년 개정)를 바탕으로 구분된 분석 자료를 통계청(2018)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서

[표 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명	변수설명	변수 속성 및 단위
종속변수	불안정성	소득 불안정성	시간당 소득이 ILO의 저임금 기준 미만인 경우 소득 불안정성 없음 = 0 소득 불안정성 있음 = 1
	불안정성	사회보험 불안정성	3개의 사회보험 중에서 하나라도 배제된 경우 사회보험 불안정성 없음 = 0 사회보험 불안정성 낮음 = 1 사회보험 불안정성 중간 = 2 사회보험 불안정성 높음 = 3
독립변수	사업 특성	업종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산업군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 = 0* 제조 및 건설업 = 1 도소매 및 운수업 = 2 사업 서비스업 = 3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 = 4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5
		사업체 규모	사업체 고용원 규모 수준 없다(0명) = 0* 1~4명 = 1 5명 이상 = 2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등록 유무 없음 = 0* 있음 = 1
		사업 지역	사업체 소재 지역 비수도권 = 0* 수도권 = 1
		자기 사업장	자기 사업장 유무 없음 = 0* 있음 = 1
		사업 지속기간	사업 지속 년 수 연속 변수
		자본 특성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		금융자산 규모(만 원) 연속 변수
	총 부채		총 부채 규모(만 원) 연속 변수
	개인 특성	성별	성별 여성 = 0* 남성 = 1
		연령	조사 시점 만나이(세) 연속 변수
		학력	최종 학력 고졸 이하 = 0* 2년제 대졸 이하 = 1 4년제 대졸 이상 = 2

9) 1차 산업에 해당하는 농어업은 고용형태 상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상이한 노동자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다(이승렬 외, 2009).

청년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사업체 규모는 연구대상자의 사업체 고용원 규모를 파악하는 변수로, 응답에 따라 ‘없다’, ‘1~4명’, ‘5명 이상’의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사업자 등록 유무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사업자 등록 유무를 파악하는 변수로, 응답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사업체’를 ‘사업자 등록 없음’으로 보았으며, ‘사업자 등록이 있는 개인 사업체’를 ‘사업자 등록 있음’으로 보았다. 사업 지역은 연구대상자의 사업체 소재 지역을 의미하는 변수로,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이를 18개 시·도로 구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를 ‘수도권’으로, 그 외 시·도 지역을 ‘비수도권’으로 재구성하였다. 자기 사업장 유무는 연구대상자의 자기 사업장 유무를 파악하는 변수로, 응답 중 ‘나의/나의 가족의 사업장(건물 및 땅)’을 ‘자기 사업장 있음’으로 보았으며, 그 외의 응답을 ‘자기 사업장 없음’으로 보았다.¹⁰⁾ 사업 지속기간은 연구대상자의 자영업 지속기간을 파악하는 변수로, 년 단위로 측정된다. 설문지 내에서 일자리 시작 시기에 대한 응답인 ‘___년 __월 __일’ 중 년도를 기초로 하여, 각 응답자의 일자리 시작 년도를 각 조사 년도에서 뺀 값으로 변수를 재구성하였다.

자본 특성은 가구 단위로 측정되는 자산 변수의 속성으로 인하여 개인자료와 가구자료를 결합한 후 분석하였다. 부동산 자산은 연구대상자 가구가 소유한 부동산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연속형 변수로, 조사된 변수인 ‘거주주택 시가’와 ‘거주주택 외 소유부동산 시가 총액’을 합한 값으로 재코딩한 연속형 변수를 ‘부동산 자산’ 변수로 활용하였다. 금융 자산은 연구대상자 가구가 소유한 금융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연속형 변수로, 금융 자산 유무와 금융 자산 총액을 파악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초로 한다. 총 부채는 연구대상자 가구가 갖고 있는 총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연속형 변수로, 부채 유무와 부채 잔액을 파악하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활용하였다.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총 부채 변수는 선형성을 가정하는 회귀분석에서 자연로그 값을 취한 후 분석에 사용되었다(김태근, 2006; 이현정·유종선, 2016).

개인 특성 중 학력은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졸업까지 포함하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2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의 졸업까지 포함하는 ‘2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 이하’, 4년제 대학에서의 졸업부터 포함하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범주로 재구성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년 자영업자의 사업 특성, 자본 특성, 개인 특성이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PSS 24.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활용한 분석으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이항 로지

10) 그 외의 응답에는 ‘나의 집(나의 집에서 과외 지도 등)’, ‘남의 집(방문 과외 등)’, ‘거리(노점 등)’, ‘야외 작업현장’, ‘운송수단(자동차, 트럭, 고깃배 등)’, ‘기타’가 있다.

스틱 회귀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있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는 연구대상자인 청년자영업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본 연구 목적에 핵심적인 분석인 회귀분석을 통해 전체 독립변수가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 중에서 소득 불안정성은 2개의 질적 범주로 구성된 이분형 변수이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사회보험 불안정성은 3개 이상의 질적 범주로 구성된 다분형 변수이므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평행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3으로 나타나 종속변수 범주의 기울기 계수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기 때문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4. 분석 결과

1) 청년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 및 불안정성 현황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에 대해 파악하기에 앞서 [표 3]에서 사업 특성, 자본 특성, 개인 특성으로 구분된 청년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자영업자의 사업 특성 중 업종은 도소매 및 운수업(29.0%),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19.6%),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16.2%) 순으로 많았다. 청년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도소매 및 운수업, 음식숙박업 및 문화여가업 등과 같이 생산성에 따른 이질성이 큰 전통적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지만, 동시에 전체 자영업자 집단과 달리 교육 서비스업의 높은 비중이 특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지은정, 2012; 황광훈, 2017). 사업체 규모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62.9%), 1~4명의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29.8%) 순으로 많으며, 청년 자영업자의 92.7%가 5인 미만의 사업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 등록은 응답자의 77.0%가 소지하고 있으며, 사업체 소재 지역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42.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사업장은 전체 연구대상자 중 75.6%가 보유하고 있고, 사업 지속기간은 평균 3.68년으로 나타나 청년 자영업자의 평균 사업 지속기간이 약 30개월로 확인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채창균 외, 2012; 황광훈, 2017). 다음으로, 자본 특성 중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평균은 1억 8489만 원, 금융 자산의 평균은 6718만원, 총 부채의 평균은 69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 특성 중 성별은 여성(38.7%)에 비해 남성(61.3%)이 약 2배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령 평균은 35.74세로 20대보다 3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35.9%), 4년제 대학 졸업 이상(35.7%), 2년제 및 전문 대학 졸업 이하(28.3%) 순으로 나타났지만, 각 범주 별로 그 비중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청년 자영업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속성		빈도	%	N
사업 특성	업종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		81	16.2	500
		제조 및 건설업		47	9.4	
		도소매 및 운수업		145	29.0	
		사업 서비스업		79	15.8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		98	19.6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0	10.0	
	사업체 규모	0명		323	62.9	512
		1~4명		153	29.8	
		5명 이상		30	7.3	
	사업자 등록	없음		118	23.0	
		있음		394	77.0	
	사업 지역	비수도권		295	57.6	
		수도권		217	42.4	
	자기 사업장	없음		125	24.4	
있음		387	75.6			
근속 기간 (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0	17	3.677	3.529		
자본특성	부동산 자산(만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0	225000	18498.75	27882.34	
	금융 자산 (만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0	57260	6718.57	8507.77	
	총 부채 (만원)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0	85000	6929.88	11127.86	
개인특성	성별	여성		198	38.7	
		남성		314	61.3	
	연령(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1	39	35.738	3.777	
	학력	고졸 이하		184	35.9	
		2년제 대졸 이하		145	28.3	
4년제 대졸 이상		183	35.7			

[표 4]의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현황 분석 결과 비교적 낮은 소득 불안정성 비중에 비하여 높은 사회보험 불안정성 비중이 특징적이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소득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107명(20.9%)로 청년 자영업자의 1/5가 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경우 청년 자영업자 중 50명(9.8%)만이 3개의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사회보험 불안정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1개의 사회보험에서라도 배제된 경우가 약 90%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조사된 3개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모두 배제된 경우는 전체 청년 자영업자 집단 중 48.0%로, 청년 자영업자의 절반이 높은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현황

구분	속성	빈도	%	N
소득 불안정성	없음	405	79.1	512
	있음	107	20.9	
사회보험 불안정성	사회보험 불안정성 없음	50	9.8	510
	사회보험 불안정성 낮음	43	8.4	
	사회보험 불안정성 중간	172	33.7	
	사회보험 불안정성 높음	245	48.0	

2)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요인

(1) 소득 불안정성의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독립변수인 사업 특성, 자본 특성, 개인 특성이 소득 불안정성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였다. 우선 Hosmer와 Lemeshow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997로 나타나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므로 본 연구에서 추정된 모형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해당 분석의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Nagelkerke R^2 값은 .187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변량의 18.7%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 특성 중 업종과 사업체 규모, 자기 사업장 유무, 사업 지속기간이, 자본 특성 중 금융 자산이, 개인 특성 중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 변수로 나타났다. [표 5]에 표시한 독립변수 별 로지스틱 회귀계수를 바탕으로 각각의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1이 될 확률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산하였다(김태근, 2006).¹¹⁾ 우선 사업 특성의 업종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특징적인 사업 서비스업과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 각각이 소득 불안정성 집단에 포함될 확률은 음식점 및 숙박업의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19.6%, 23.8%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체 규모에서 또한 고용원이 1~4명인 경우와 5명 이상인 경우 모두 자영업자보다 평균적으로 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할 확률이 14.6%, 27.3% 감소하여, 고용주가 소득 불안정성의 유의미한 부(-)적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청년 자영업자 또한 전체 자영업자 집단과 마찬가지로 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할 확률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금재호·이인실, 2011; 지은정, 2012; 임은의·임유진, 2013). 한편 자기 사업장이 없는 청년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장이 있는

11) 종속변수에서 사건(소득 불안정성)이 일어난 확률()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공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할 확률이 14.4%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는 자기 사업장의 소유 및 유지가 자영업자의 소득보다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업 지속기간이 1년 증가할수록 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1.6%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의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저소득 집단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이승렬·최강식, 2007; 금재호·이인실, 2011). 자본 특성 중 금융 자산(OR=.896, $p<.05$)이 1단위 증가할수록 소득 불안정성이 있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 중 성별의 경우 여성 청년 자영업자가 남성인 경우보다 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할 확률이 12.3% 증가하여, 최강식·정진화(2007)의 분석 결과에서와 같은 자영업자에 대한 성차별적 요인이 청년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청년 자영업자의 업종이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보다 사업 서비스업과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인 경우,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자기 사업장이 없을수록, 사업 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금융 자산이 증가할수록, 여성보다 남성일 경우 소득 불안정성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표 5]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 영향요인

구분		속성	소득 불안정성	
			B	S.E
사업 특성	업종	제조 및 건설업	-.809	.503
		도소매 및 운수업	-.595	.352
		사업 서비스업	-1.215**	.440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	-1.469**	.467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09	.446
	사업체 규모	1~4명	-.902**	.310
		5명 이상	-1.685*	.777
		사업자 등록	.218	.329
		사업 지역	.030	.253
		자기 사업장	.888**	.334
		사업 지속기간	-.096*	.043
자본 특성	부동산 자산		-.026	.027
	금융 자산		-.109*	.051
	총 부채		.000	.029
개인 특성	성별	남성	-.761**	.254
	연령		-.015	.033
	학력	2년제 대졸 이하	.095	.293
		4년제 대졸 이상	-.048	.318
	상수항		1.3940	1.269
Nagelkerke R ²			.187	
N			500	

※ 기준변수: 업종-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 사업체 규모-0명, 사업자 등록 유무-없음, 사업 지역-비수도권, 자기 사업장 유무-없음, 학력-고졸 이하, 성별-여성

(2)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와 같다. 우선 추정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수가 가장 많은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집단을 기준범주로 설정하였다(김태근, 2006).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최종모형의 $-2LL$ 은 892.398로, 절편만 포함한 널모형(null model)의 $-2LL$ 인 1154.138보다 261.751($p < .001$, $df=54$)만큼 향상되어 최종모형이 적합하며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립변수 별로 사회보험 불안정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업 특성 중 업종의 경우 기준 범주인 음식숙박업 및 문화여가업보다 제조 및 건설업, 사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 자영업자가 2개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나아가 교육 서비스업과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 자영업자는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청년 자영업자 중 자영자가 아니라 고용주인 경우 1개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증가하여 안중순(2015)의 연구결과가 청년 자영업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또한 높은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사업자 등록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에서 자영업자의 가입 유형 혹은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에, 기존 연구와 같이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가입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이 결정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이병희 외, 2016). 사업 지역이 수도권일 경우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의 사회보험에라도 가입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사업 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2개 이하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청년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기간이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배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승렬·최강식, 2007; 금재호·이인실, 2011). 자본 특성 중 금융자산만이 유일하게 청년 자영업자가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보다 2개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영향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개인 특성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 모든 3개의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확률이 증가하였다. 기존 자영업자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요인 연구와 비교하면 청년 자영업자 또한 중고령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여성일수록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상진, 2009; 김수완·김상진, 2012; 안중순, 2015). 마지막으로 학력이 4년제 대졸 이상인 청년 자영업자는 고졸 이하인 경우보다 1개의 사회보험에라도 더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체적으로 사업 특성 중 업종, 사업체 규모, 사업자 등록, 사업 지역이, 자본 특성 중에서 금융자산이, 개인 특성 중에서 성별, 학력이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수준을 결정하는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모든 사회보험에서 배제되기보다 1개라도 가입할 가능성은 자영자보다 고용주일수록, 사업자 등록이 있을수록, 사업 지역이 수도권일수록, 사업 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남성일수록, 고졸보다 4년제 대졸 이상일수록 높아졌다. 나아가 2개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은 업종이 제조 및 건설업, 도소매 및 운수업, 사업 서비스업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사업자 등록이 있을수록, 사업 지속기간이 증가할수록, 금융자산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3개의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할 가능성은 업종이 제조 및 건설업, 사업 서비스업,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사업자 등록이 있을수록, 남성일수록 높아졌다.

[표 6]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 영향요인(기준=높음)

구분	속성	중간		낮음		없음		
		B	S.E	B	S.E	B	S.E	
사업 특성	업종	제조 및 건설업	.136	.504	2.208**	.848	2.108**	.787
		도소매 및 운수업	.150	.356	1.513*	.750	1.329	.689
		사업 서비스업	.544	.404	1.986*	.792	1.655*	.740
		교육 및 보건사회 서비스업	-.249	.446	1.499	.852	1.979**	.732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81	.466	1.834	.952	2.814***	.808
	사업체 규모	1~4명	.662*	.278	1.263**	.440	2.932***	.557
		5명 이상	.677	.639	2.123**	.765	4.396***	.787
	사업자 등록	있음	1.299***	.348	3.355**	1.105	2.276*	1.136
	사업 지역	수도권	.559*	.242	.498	.393	.316	.399
	자기 사업장	있음	.176	.306	-.856	.508	-.118	.703
사업 지속기간		.138***	.036	.163**	.058	.035	.065	
자본 특성	부동산 자산		.009	.026	.056	.042	.052	.043
	금융 자산		.094	.055	.486**	.164	.259	.135
	총 부채		.002	.028	-.045	.045	-.006	.046
개인 특성	성별	남성	.659**	.249	.589	.434	1.260**	.458
	연령		.043	.034	-.011	.058	-.004	.059
	학력	2년제 대졸 이하	.537	.287	.522	.476	-.155	.526
		4년제 대졸 이상	.749*	.307	.367	.503	.478	.489
상수항		-5.731	1.325	-11.193	2.708	-10.322	2.623	

* $p < .05$ ** $p < .01$ *** $p < .001$

※ 기준변수: 업종-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 사업체 규모-0명, 사업자 등록 유무-없음, 사업 지역-비수도권, 자기 사업장 유무-없음, 학력-고졸 이하, 성별-여성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청년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자영업자의 불안정성 논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정의하고 사업 특성, 자본 특성, 개인 특성이 청년 자영업자의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업종, 사업체 규모, 사업자 등록 유무, 자기 사업장 유무, 금융 자산, 성별이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년 자영업자의 업종은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기존 한국의 자영업 노동시장 특성인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의 경우 전체 자영업자 집단과 같이 청년 자영업자 집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동시에 다른 업종보다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영세한 업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전체 자영업자에 비해 청년 자영업자 중에서 특징적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교육 서비스업의 경우,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경험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 자영업자와 달리 청년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이질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 자영업자의 사업체 규모 및 종사상 지위는 모든 독립변수 중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요인이다. 청년 자영업자 또한 기존 연구와 같이 자영자보다 고용주일수록,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 자영업자 집단 내에서도 자영자와 고용주, 나아가 5인 미만 영세 고용주와 5인 이상 고용주 간의 이질성으로 인한 소득 및 사회안전망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안중순, 2015). 이러한 결과는 자영자가 자영업자 집단 내에서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이 높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며, 자영업자 대상 정책에서 고용주보다 자영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이승렬, 2018).

사업자 등록 유무는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영향 요인으로, 사업자 등록은 불투명한 소득 체계로 인한 과세의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기존 연구에서 예측되어 왔다(이병희, 2011; 이병희 외, 2016). 본 연구에서 사업자 등록이 있는 청년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불안정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는 분석 결과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자영업자의 가입 자격이 결정되는 일부 사회보험의 제도적 설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시한다(김혜원, 2018). 본 연구의 결과는 사업자 등록이 가입 조건인 현행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표준적 고용관계에 있는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지만 임금근로자도 아니고 무급가족종사자도 아닌 취업자들, 다시 말해 비전형 노동자의 사회보험 배제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또한 자기 사업장 유무는 소득 불안정성의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어, 서정희·박경하(2016)의 예측과 유사하게 자기 사업장이 없는 경우 유의하게 소득 불안정성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임차료, 대출이자, 수수료 등의 부담이 높고 임차인 보호가 부족하여 주요 상권에서 내몰리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허자연 외, 2015; 관계부처 협동, 2018). 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상가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사업장을 갖는 자영업자의 부담이 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적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자기 사업장이 없는 경우 세부 업종 분포에서 소득 불안정성이 낮은 교육 서비스업과 운수업의 비중이 과반수로 나타나 플랫폼 노동자 혹은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은 모든 연구 모형에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청년 자영업자 집단 내에서도 성별에 따른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기존 자영업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가 청년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또한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강식·정진화(2007)에 따르면, 자영업자 집단에 대한 소비자의 차별적 요인이 임금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적 요인보다 크며, 업종에서 서비스업일수록, 직종에서 전문직일수록 여성 자영업자는 생산성 요인보다 성차별적 요인으로 인한 소득 격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이자 여성인 자영업자가 경험할 수 있는 성별로 인한 차별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앞서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영업자의 업종별 소득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숙박음식점 및 문화여가업의 경우, 대표적으로 생산성이 낮아 유입 및 이탈이 활발한 전통적 서비스업종 중 하나이므로 높은 소득 불안정성은 청년 자영업자의 사업 지속기간을 더욱 짧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의 사업 지속을 위한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폐업 및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또한 필요하다. 즉,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 자격의 제한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홍보 및 가입 유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사업체 규모에 따라 자영업자와 영세한 고용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영

자를 대상으로 자영업 운영 및 경영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수환·감형규(2017)의 논의에서와 같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서 자영자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단순히 고용원 규모에 따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이기평·김영미(2018)은 모든 업종의 자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자영자의 업종 제한 폐지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자영자 또한 임금근로자만큼 산재위험률이 높고 산재사고 건수가 많다는 경험적 근거 또한 해당 논의를 뒷받침한다(조흥학, 2018; 이기평·김영미, 2018). 따라서 자영업자의 종사상 지위 및 사업체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는 가입 자격과 보험료 부담 측면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 유무의 경우, 단순히 청년 자영업자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보험법에서 노동이 임금근로자를 기준으로 정의되어 사회 변화에 제도가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기준에서 정의된 실업을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실업을 ‘폐업’으로 판단하게 했으며, 산재보험 적용에 있어 업무를 ‘사업’으로 판단하게 하였다. 그렇기에 사업자 등록이 가입 조건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문제는 프로젝트 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비전형 노동자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사회보험 배제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업이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 상 재해가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은 분명히 보수를 대가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그들의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유무만으로 노동과 연결된 사회적 위험을 파악할 수 없는 비전형 노동자와 같은 자영업자 집단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한편 자기 사업장 유무가 청년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성의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는 결과는 사업장 소유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다층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수수료 등의 증가로 자기 사업장 소유 및 유지로 인한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카드 수수료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금융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관계부처 협동, 2018). 무엇보다도 구조적 측면에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허자연 외, 2015; 관계부처 협동, 2018).

마지막으로, 청년 중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서 여성은 청년, 노인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집단이다. 최강식·정진화(2007)의 논의에서와 같이 생산성 차이

로 설명되지 않는 소비자의 차별적 요인으로 인한 소득 차이가 자영업자의 소득 성별 격차를 설명한다면, 성평등 노동 정책이 임금근로자 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비임금근로자 집단에서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대응은 성차별적 노동시장 관행 개선 및 철폐와 같은 장기적인 접근과 청년 여성 자영업자에 특화된 단기적인 접근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제도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 여성인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각자가 경험한 노동시장 성차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청년 여성 자영업자의 노동 불안정성을 결정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감사원 (2016). 청년고용대책 성과분석. <https://www.mss.go.kr/site/smba/mss/ex/bbs/View.do?cbIdx=133&bcIdx=1001058&parentSeq=0>
- 고가영, 이근태 (2012). 저부가가치에 몰리는 창업 자영업 경기 더 악화시킨다. LGERI 리포트.
- 곽동철, 주영혁, 조봉현 (2016). 창업기업 생존율 영향 요인 고찰: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8(4). 77-94.
- 관계부처 합동 (2018).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18718&menuNo=4010100
- 국세통계담당관실 (2017). 국세통계로 보는 청년 창업활동. https://stats.nts.go.kr/notice/notice_view.asp?idx=2126
- 금재호 (2012).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노동리뷰. 91. 57-75.
- 금재호, 이인실 (2011). 자영업 매출과 소득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29(4). 103-140.
- 김경아, 한정림 (2012). 자영업자의 국민연금가입 제고방안. 서울: NPS 국민연금연구원.
- 김기현 (2014). 청년층의 창업 및 기업을 정신 실태와 시사점. 고용이슈. 7(6). 6-37.
- 김도균 (2015). 자영업 부채의 이중성과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부채 증가. 경제와 사회. 108. 73-107.
- 김도균 (2018). 연령별 자영업 경험과 소득계층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25(2). 281-304.
- 김동현 (2014).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국제비교와 정책방향.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521-536.
- 김민수, 나현우, 김병철, 김영민, 이기원, 김강호 (2017). 청년 비전형 노동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서울: 서울연구원.
- 김복순 (2009). 경제위기 최일선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 추이 및 시사점. 노동리뷰. 51. 12-24.
- 김상일, 허자연 (2016). 서울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와 정책적 쟁점. 서울: 서울연구원.
- 김상진 (2009).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5(2). 1-28.
- 김세움, 김주섭 (2018). 청년층 노동시장정책 심층평가: 창업지원사업.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수완, 김상진 (2012). 자영업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공·사 연금 가입행태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3-27.
- 김수환, 감형규 (2017).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0(1). 69-87.
- 김일광 (2018). 우리나라 자영업 업체 현황과 재무특성에 관한 연구 - 산업별 비중 및 창·폐업, 생존기간 분석을 중심으로 -. 지역산업연구. 41(3). 343-364.
- 김창오 (2015). “불안정노동-자영업-연금제도배제” 경로 탐색 -자영업 이행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시간 연구. 사회보장연구. 31(1). 83-107.
- 김태근 (2006). (u-can)회귀분석. 서울: 인간과복지.
- 김태일 (2016). 자영업자 과잉과 서비스업 생산성의 관계, 그리고 문제 해결의 방향. 사회과학연구. 42(2). 1-27.
- 김혜원 (2018). 예술인 고용보험 설계의 쟁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 15-23. (2018. 7. 5).

- 남윤미 (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을 결정요인 분석. 서울: 한국은행.
- 남윤형, 이준호, 이재호, 우제현 (2016).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 반정호 (2011).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실태와 변화: 1990~2010년. 노동리뷰. 79. 19-32.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2). 57-90.
- 서정희, 박경하 (2015). 비정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불안정 노동. 한국사회정책. 22(4). 7-42.
- 서정희, 박경하 (2016). 한국의 가짜 자영업 추정을 통해서 본 비정규 근로자 규모의 오류. 한국사회정책. 23(3). 49-77.
- 서정희, 백승호 (2014).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노동정책연구. 14(3). 37-78.
- 서정희, 백승호 (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 사회. 56. 113-152.
- 석재은 (2003).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한국사회복지학. 53. 285-309.
- 성지미 (2011). 자영업 선택과 성과 간의 관계. 노동정책연구. 11(3). 53-80.
- 안준순 (2015). 자영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이질성과 사회적 위험대응의 계층 간 차이. 사회복지정책. 42(1). 239-264.
- 안주엽, 성지미 (2003). 자영업 지속기간의 결정요인. 노동경제연구. 26(2). 1-30.
- 엄주영 (2018). 경기지역 자영업 현황과 시사점. 경기: 한국은행 경기본부.
- 오재호 (2019). 고용주 없는 고용 시대,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슈&진단. 365. 1-25.
- 윤도현 (2014). 한국의 복지국가와 중간계급: 자영업자 문제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15. 63-102.
- 이기평, 김영미 (2018). 중소벤처기업 법제연구(II) - 소상공인·자영업자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이병훈, 신재열 (2011). 자영업자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92. 247-274.
- 이병희, 박찬임, 오상봉, 강병구, 김숙경 (2016).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최강식 (2007).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7(4). 59-85.
- 이승렬, 김종일, 박찬임, 이덕재, 홍민기 (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김세움, 김진영, 성재민, 오선정, 홍민기 (2017). 청년층 노동시장정책의 종합적 평가.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2018).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노동리뷰. 36-59.
- 이승윤, 백승호, 김미경, 김윤영 (2017).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 487-521.
- 이승윤, 박경진, 김규혜 (2019). 한국 청년프리랜서의 일의 방식과 사회보장제도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비판사회정책. 64. 181-239.
- 이윤진 (2017). 사회보험의 '근로자 개념'에 대한 연구: 고용보험 재심사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33(3). 139-167.
- 이철수, 안상훈, 성주호, 김수완, 김홍영, 장우찬 (2014).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방안. 서울: 국제노동법연구원.
- 이현정, 유종선 (2016). 자영업과 임금근로 자가소유 가구의 자산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17(1). 99-114.
- 임은의, 임유진 (2013). 자영업 집단내 소득불평등 영향요인 연구. 글로벌사회복지연구. 3(1). 49-76.

- 장지연, 황덕순, 은수미, 이병희, 박제성, 전병유 (2011).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보장체계의 정합성.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장지연, 김근주, 박은정, 이승윤, 정슬기 (2017).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유형과 정책적 대응.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 (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조흥학 (2018). 산안법에서 위험작업의 근로자 보호방안. 노동법논총. 42. 69-121.
- 주현, 김숙경, 김종호 (2013). 개인기업의 실태 및 정책과제. 서울: 산업연구원.
- 지은정 (2012). 경기변동이 자영업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 -구축과결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2). 141-178.
- 지은정 (2012). 자영업 근로소득의 불평등 요인과 변화. 한국사회복지학. 64(2). 55-83.
- 지은정 (2013). 자영업자의 취업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5(1). 147-174.
- 채창균, 오호영, 윤희한, 정재호, 신동준, 이인재 (2012). 주요 청년고용 정책 이슈 분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강식, 정진욱, 정진화 (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135-156.
- 최강식, 정진화 (2007). 성별 소득격차의 분해. 경제학연구. 55(4). 217-241.
- 최문경, 이명진 (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1). 21-51.
- 통계청 (2018).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3/2/index.board
- 한정림, 김경아 (2014).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형태와 연금수혜 분석. 산업경제연구. 27(6). 2277-2300.
- 허자연, 정연주, 정창무 (2015).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 과정 및 사업자 변화에 관한 연구 : 경리단길 사례. 서울도시연구. 16(2). 19-33.
- 홍석일 (2018). 자영업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구축.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포용성장연구단.
- 황광훈 (2017). 이슈분석 늘어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 황덕순 외 (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황종률 (2019). 최근 자영업자의 업종별 취업자수 변동 분석. NABO 경제동향&이슈. 76. 41-57.
- Burchell, B., Coutts, A., Hall, E. & Pye, N. (2015). Self-employment programmes for young people: A review of the context, policies and evidence. Employment Working Paper, 198, ILO.
- Buschoff, K. & Schmidt, C. (2009). Adapting labour law and social security to the needs of the 'new self-employed' - comparing the UK, Germany, and the Netherlands. European Briefing. 19(2). 147-159.
- Dvoulety, O., Mühlböck, M., Warmuth, J. & Kittel, B. (2018). "Scarred" young entrepreneurs: Exploring young adults' transition from former unemployment to self-employment. Journal of Youth Studies. 21(9). 1159-1181.
- Eurofound (2015). *Youth entrepreneurship in europe: Values, attitudes, polici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Jones, K, Brinkley, I. & Crowley, L. (2015). *Going solo: Does self-employment offer a solution to youth unemployment?*. London: The Work Foundation.

- OECD (2016).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https://www.oecd-ilibrary.org/industry-and-services/entrepreneurship-at-a-glance-2016_entrepreneur_aag-2016-en
- OECD (2019). *OECD Employment Outlook 2019: THE FUTURE OF WORK*. <https://www.oecd-ilibrary.org/sites/9ee00155-en/index.html?itemId=/content/publication/9ee00155-en>
- Ortlieb, R., Sheehan, M. & Masso, J. (2018). Do business start-ups create high-quality jobs for young people?. In O'Reilly, J., Leschke, J., Ortlieb, R., Seeleib-Kaiser, M. & Villa, P. (eds). *Youth labor in transition: Inequalities, mobility, and policies in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edersini, R. & Coletto, D. (2009). *Self-Employed Workers: Industrial Relations and Working Conditions*. Eurofound.
- Rouse, J. & Kitching, J. (2006). *Do enterprise support programmes leave women holding the baby?* London: Kingston University Research Repository.
- Shane, S. A. (2008). *The Illusions of Entrepreneurship: The Costly Myths That Entrepreneurs, Investors, and Policy Makers Live B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World Bank (2018). *Doing Business 2018*. <https://www.doingbusiness.org/en/reports/global-reports/doing-business-2018>

Abstract

Determinants of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n Young Self-Employed Workers

Gyu Hye Kim*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precariousness of self-employment. The analysis data was based on the Korean Labor & Income Panel Survey (KLIPS) from the 16th to the 20th, and the young self-employed workers in the study were between 19 and 39 at the time of th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a total of 512 respondents. In the research design, the dependent variables are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business characteristics (industry, business size, business registration, business region, one's own business establishment, business duration period), capital characteristics (real estate assets, financial assets, total liabilitie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sex, age, education).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incom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workers showed that when they were in education sector rather than restaurant, accommodation, culture and leisure sector, as the size of the business increases, the more financial assets increase, and when they were men, it is less likely to experience the income precariousness. Next, th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found that industry, business size, business registration, business region among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financial assets among capital characteristics, gender and education among personal characteristics were significant factors that determined the level of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for young self-employed workers. Finally,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d social policy implications to cope with income and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of young self-employed workers.

Keywords: young self-employed workers, income precariousness, social insurance precariousness

◆ 2020. 1. 31. 접수 / 2020. 3. 5. 1차수정 / 2020. 3. 13. 게재확정

* Researcher, Information Analysis Research Center,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ghkim1003@gmail.com)